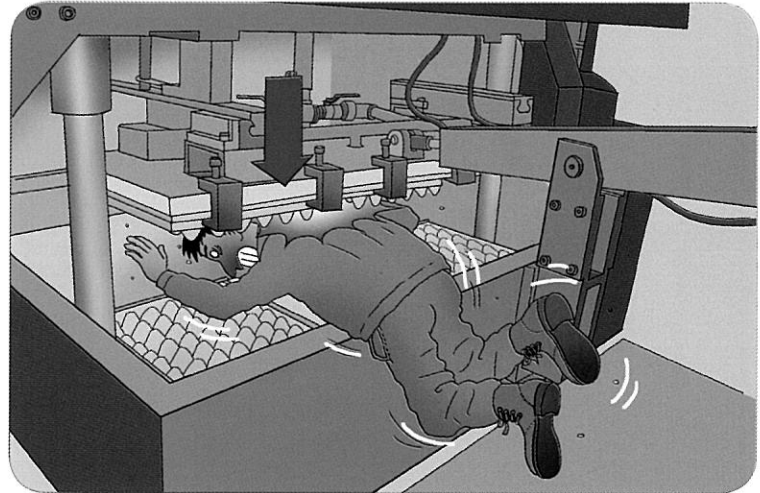


펄프 성형기에 협착

재해개요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는 계란운반상자 제작용 건식 펄프성형기에서 작업 중 불량품이 아래쪽 금형에 달라붙자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지 않고 금형이 하강되기까지의 9초 동안 금형 안에 머리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불량품을 제거 중 9초 이내에 불량품을 제거하지 못하여 하강하는 금형에 머리 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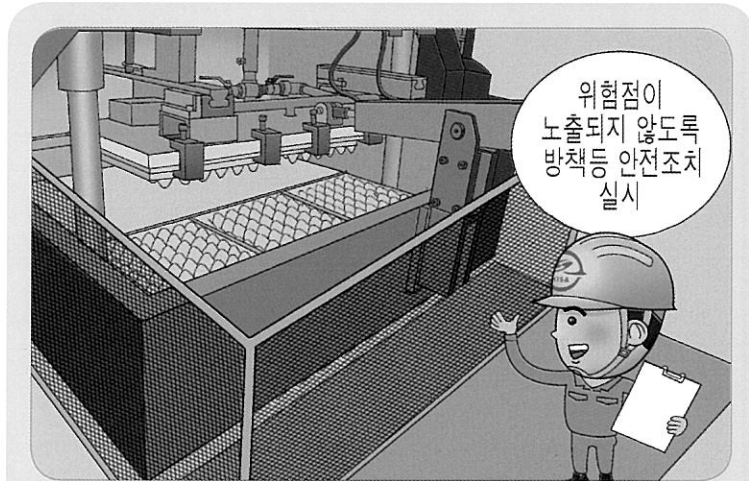
재해원인

- ① 비정상작업 시 주전원 미차단
- ② 수공구 등 보조기구 미사용
- ③ 위험점에 신체 일부 삽입하여 작업
- ④ 방호울 등 안전조치 미실시
- ⑤ 안전교육 미실시
- ⑥ 관리감독 소홀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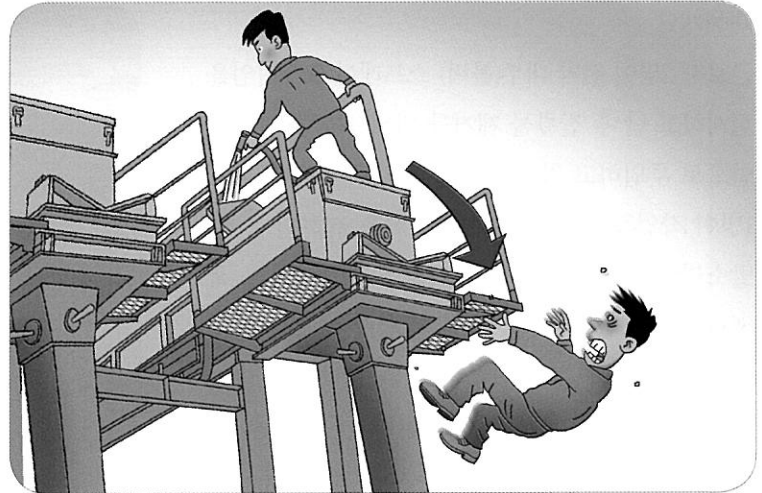
- ① 비정상작업 시 전원차단 및 정지상태 확인 후 작업
- ② 위험점 작업 시 보조기구 사용
- ③ 위험점에 신체 삽입 금지
- ④ 위험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호울 등 안전조치 실시
-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
- ⑥ 관리감독 철저

업종	종이제품제조
생산품	계란운반상자
가해물	펄프 성형기
재해유형	협착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

고소작업장 청소작업 중 추락

재해개요

석탄가스를 제조하는 설비인 퍼그믹서의 계획 정지로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상부 덮개를 개방 후 협소한 공간(폭 7cm 정도의 탱크 프레임)에 서서 고압호스로 코팅제거(물청소) 작업 중 물기에 의해 왼발이 미끄러지며 실족하여 약 4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함.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재해원인

- ①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② 협소한 공간에서 안정되지 못한 자세로 작업
- ③ 적정 작업발판 미사용
- ④ 작업안전수칙 무시
- ⑤ 안전의식 결여
- ⑥ 관리감독 소홀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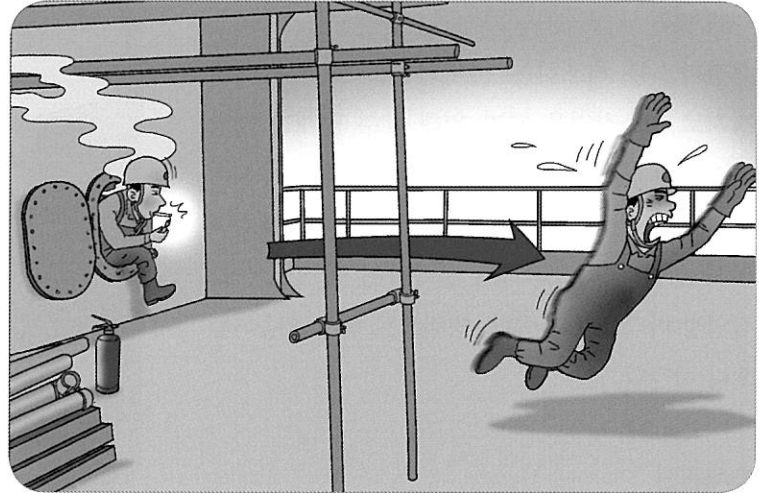
- ① 안전대 등 적정보호구 착용
- ②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③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사용
- ④ 작업안전수칙 준수
- ⑤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
- ⑥ 관리감독 철저

업종	석탄가스제조	
생산품	과립입상화	
가해물	작업장 바닥	
재해유형	추락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

도장 작업장 내 흡연 시 폭발

재해개요

근로자 2명이 선박 내부(블럭)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실시하고 난 후 잔류물 제거를 위해 신너를 작업장 안으로 투입하고 잠시 휴식을 갖기로 하여 근로자 1명이 작업장에서 먼저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폭발소리와 함께 아직 작업장 내 있던 피해자가 폭 60cm 정도의 개구부를 통해 작업장 밖으로 튕겨 나옴.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오며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 피해자는 전신 2도 화상, 두개골 함몰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함.



재해원인

- ① 폭발위험장소 및 주변에서 흡연 실시
- ② 폭발위험작업 시 점화원(담배, 라이터) 통제 미실시
- ③ 작업 후 환기조치 미실시
- ④ 안전부서에 위험작업 승인 미실시
- ⑤ 안전교육 미실시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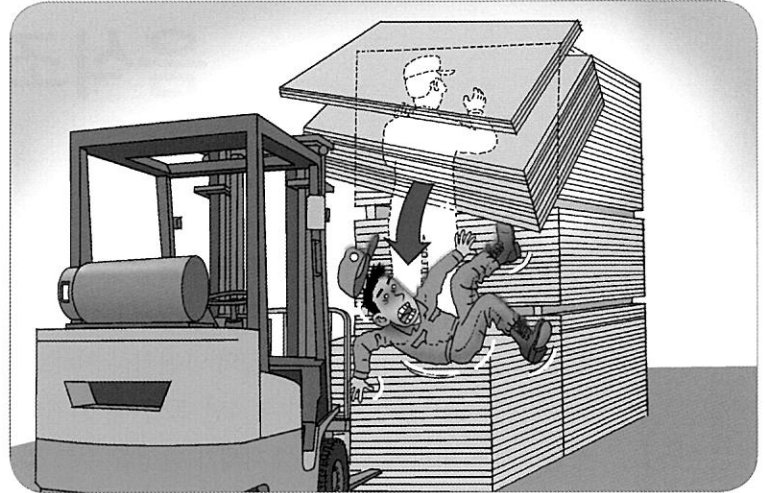
- ① 폭발위험장소 및 주변에서 흡연금지
- ② 도장작업 시 점화원 지참 금지
- ③ 작업 중 및 작업 후 환기 또는 불활성 기체로 치환
- ④ 위험작업 시 안전부서에 위험작업 승인 실시
-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

업종	선박건조수리업	
생산품	블록 도장	
가해물	폭발화염	
재해유형	폭발	
피해 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

원자재 적재 중 낙하

재해개요

입사한지 1개월 미만인 피재자는 창고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주방가구용 원자재를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원자재 상단에 추가 적재를 위해 적재되어 있는 원자재 다발의 중간부분에 손을 넣고 더 높은 곳에 고임목을 설치하던 중 편하중 발생으로 적재되어 있던 원자재 40장(35kg/1장)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위로 떨어짐. 비재자는 창고 바닥과 원자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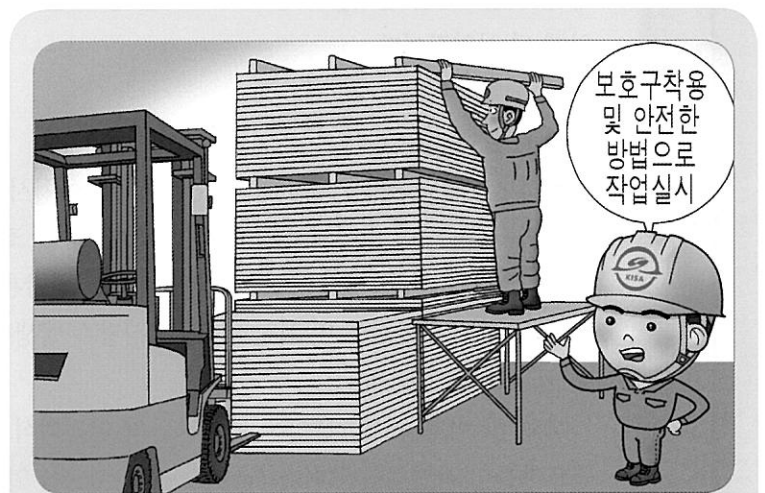


재해원인

- ① 안전하지 못한 작업방법으로 편하중 발생
- ②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미착용
- ③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관리소홀
- ④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작업 실시
- ⑤ 중량물취급계획서 미작성
- ⑥ 피재자의 안전의식 결여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대책

- ① 안전한 방법의 작업실시
- ②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 ③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관리 철저
- ④ 유자격자에 의한 3톤 이상 지게차 사용
- ⑤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 및 계획서에 의한 작업 실시
- ⑥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

업종	목제품제조	
생산품	주방가구	
가해물	원자재	
재해유형	낙하	
피해 정도	인적	사망 1명
	물적	-